

결 정 문

사건번호: KR-2400258

신 청 인: 코르보 유에스, 인크. (Qorvo US, Inc.)

피신청인: 한예송 (Han ye song)

분쟁 도메인이름 : < studioqorvo.com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코르보 유에스, 인크.

(주소: 미국 27409 노스 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손다이크 로드 7628)

(대리인: 특허법인 차 김남영 변리사)

피신청인: 한예송(Han ye song)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34번길 29 해운대롯데캐슬마린아파트

101동 2703호)

분쟁 도메인이름은 "studioqorvo.com"(이하 "본건 도메인이름")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한국에 소재한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인 주식회사 가비아(Gabia Inc.)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24년 5월 27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 에 1인조정부를 선택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5월 28일 사건을 접수하였다.

센터는 2024년 5월 31일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인 주식회사 가비아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24년 6월 3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센터는 2024년 6월 4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gksdpthd1029@naver.com)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24년 6월 24일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2024년 6월 4일 등기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주소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측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센터는 2024년 6월 25일 센터의 보충규칙에 따라 신혜원 변호사를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당일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24년 6월 26일 행정패널을 구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 "코르보 유에스, 인크 (Qorvo US, Inc.)"는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무선 주파수 및 전력공급 분야의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 "QORVO" 표지에 대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 "한예송"은 본건 도메인이름을 2024년 2월 27일 등록한 개인이며, 현재 본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i. 신청인은 2015년 설립되어 반도체, RF 무선주파수 분야의 제품들을 연구 및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유럽, 중국, 한국 등 17개 국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청인의 제품은 주로 모바일, 인프라, IoT, 국방/항공우주 및 전력 관리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2018년경부터는 "qorvogear.com" 홈페이지를 통해 의류, 모자, 가방 관련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 ii. 신청인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EU, 멕시코,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qorvo"에 관한 40개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 iii. 본건 도메인이름은 "studio"와 "qorvo"로 구성되어 있는데 "studio"는 장소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qorvo"는 조어로서,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qorvo"와 요부가 동일하고, 신청인의 도메인이름과 극히 유사하다.
- iv.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허락한 바 없고, 적법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 v. 피신청인은 2023. 11. 17.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여 "qorvo.co.kr" 도메인이름에 대한 말소 결정을 받은 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본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고,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고, 수요자들을 유인하여 신청인의 명성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5.1 절차 진행 언어

UDRP 절차규칙 제11(a)항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절차 진행 언어는 등록 약관의 언어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상황에 따라 패널은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등록자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등록기관의 약관의 언어는 한국어이다. 따라서 한국어로 절차를 진행한다.

5.2 규정 제4조 (a)항 해당 여부

UDRP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성

본건 도메인이름에서 “.com” 부분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상표와 도메인이름 동일 또는 유사 여부 판단시 이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DHL Operations B.V. v. zhangyl, WIPO Case No. D2007-1653). 이에 따라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studioqorvo” 부분의 유사 여부를 살핀다.

“studio”와 “qorvo” 문자 부분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studioqorvo”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qorvo” 전체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특징적 요소인 조어 “qorvo”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문구로 흔히 사용되는 “studio”와 결합되어 있다. 문자들을 결합한 표지의 경우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일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을 경우 분리하여 관찰이 가능하고, “qorvo” 부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

규정 제4조(a)(ii)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일응의 증명을 한 후에는(a *prima facie* case)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신청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qorvo.com”을 운영하는 것에 더하여 자신의 홈페이지 “qorvogear.com”에서 각종 의류, 모자, 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본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적법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달리 본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 제4조(b)는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와 관련하여 (i) 내지 (iv) 호의 경우를 열거하나,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 해당 여부는 각호에 한정

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현재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쇼핑몰이 잠시 쉬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만 확인 가능할 뿐이고 달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일반도메인 이름 "qorvo.co.kr"에 대한 분쟁조정(사건번호: D2023-0016) 사건에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 조정부에 의해 2023. 11. 17.자 결정에 따라 "qorvo.co.kr"에 대한 말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상표 "qorvo"를 여전히 사용하기 위하여 말소가 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대안으로 2024년 2월 27일 본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은 인정된다.

D.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규정 제4조 (a)항 소정의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판단된다.

6. 결정

위와 같은 검토와 판단의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 15조에 따라, 본건 도메인 이름 < studioqorvo.com >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신 혜 원

결정일: 2024년 7월 10일